

[별표 6]

외국어능력등가산점(제15조제3항관련)

구 분	외 국 어 능 력 (0.5)			국 외 연 수 (0.5)			
	토 익 600점 이상	토 익 550점 이상	토 익 500점 이상	2년이상	1년이상	6월이상	3월이상
평 정 점	0.5	0.3	0.2	0.5	0.3	0.2	0.1

※ 비 고

1. 외국어능력 가산점과 국외연수 가산점은 합산하여 0.5점을 초과할 수 없다.
2. 토익외의 LATT등 외국어평가 취득점수별 평정점은 위 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.
3. 국외연수는 외국대학 및 대학원 이수, 재외공관주재관 및 국제기관 파견등을 포함하며, 그 기간은 당해계급에서 연수한 것이어야 한다.